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2023. 7. 1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3년 7월 14일
 -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2021. 10. 8. 법률 제18471호로 일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되며 신설된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의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음.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도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가. 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1969년부터 도민교육을 실시를 해왔으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도민교육 운영 시 유사한 내용의 「충청북도 평생학습진흥조례」를 근거로 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해왔음.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일부개정되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교육훈련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3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음.
-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민대상 무상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·시행되고 있는 곳은 강원, 충남, 전남, 경남, 전북 총 5곳임.

《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》

지역명	조례명	제정일
1 강원도	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	2022-10-14
2 충청남도	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	2022-10-18
3 전라남도	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2-04-07
4 경상남도	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2-07-07
5 전라북도	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	2023-03-31

-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도민 교육 무상 운영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, 도민교육 운영,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4조	도민교육 운영
제2조	정의(도민, 도민교육)	제5조	지원
제3조	도민교육 운영계획	부 칙	조례 시행일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도민”과 “도민교육”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충청북도 “도민교육 운영계획”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운영계획에는 교육훈련 기본목표와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도민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△국정·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, △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, △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, △지역 역사·문화·환경의 보전(保全) 및 이해 교육, △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, △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교육과 같이 “공익상 필요한 경우”에 무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.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시행 대상이 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였는바, “도민교육 운영”에 필요한 조문 내용임.

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운영 시 무상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- 이로써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 교육 시행에 관한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는바, 향후 도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」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민”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도민교육”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 훈련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 기본목표
2.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
3.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
4.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도민교육 운영) 도지사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3조제1

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정·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
2.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
3.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
4. 지역 역사·문화·환경의 보전(保全) 및 이해 교육
5.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5조(지원)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
2.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
3.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(약칭: 지방공무원교육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71호, 2021. 10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 10. 8.>

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의 목표
2.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
3.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
4. 교육훈련의 실시
5. 교육훈련기관의 개선·발전
6.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
7.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8.>

제8조(교육훈련기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“시·도지사” 라 한다)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·도 관할구역의 시·군·자치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(이하 “지방공무원교육원” 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1. 10. 8.>

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·도의 경우 해당 시·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, 해당 시·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·도 관할구역의 시·군·자치구

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·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1. 10. 8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(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29., 2017. 7. 26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.

제12조(교육훈련계획 수립)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3조(교육훈련기관의 운영)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,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·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(有償)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사용하게 하거나,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8.>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·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1. 10. 8.>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비용발생 요인

-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및 경비

3. 관련조문

- 제5조(지원)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재정수반요인 : 도민교육 운영 및 무상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
- 추 계 기 간 :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의 결과

- 추 계 결 과 : 5년간 1,031,480천원 (연간 206,296천원)
- 도민교육 운영의 전반적인 예산 연간 206,296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이종섭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206,296	206,296	206,296	206,296	206,296	1,031,480
○ 도민행복교육						
- 일반경상수용비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- 교육교재 제작 등	25,750	25,750	25,750	25,750	25,750	128,750
- 교육실습재료 구입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20,000
- 강사수당 및 여비	84,540	84,540	84,540	84,540	84,540	422,700
- 도민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- 도민교육 현지견학 보험료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10,200
- 도민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1,216	21,216	21,216	21,216	21,216	106,080
- 찾아가는 교육운영여비	3,250	3,250	3,250	3,250	3,250	16,250
- 도민교육운영 (행사실비보상금)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- 교육생 공로시상품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- 교육참가자 응급치료비	500	500	500	500	500	2,5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